

# 협약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개 기관(이하 “17개 기관”이라 한다.)은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17개 기관의 상호 교육 협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협력시설) 17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공동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숙박시설
2. 회의시설
3. 기타 편의시설

제3조(추진방향) ① 제2조 협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호혜의 원칙에 따라 17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협력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 각 기관이 정한 기준 금액
2. 이용대상 :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3. 이용기간 :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협약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기관의 시설 이용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효력)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 협약기관 중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② 이 협약기간은 만료 전에 서면으로 갱신의 거부의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서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각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조희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강은희

강은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장휘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노옥희

노옥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이재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김병우

김병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김승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임종식

임종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이석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김석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도성훈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

설동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최교진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민병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장석웅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박종훈

박종훈

### 전국 시·도 교육청, 수련·휴양시설 공동사용 협약



(서울=연합뉴스) 22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교직원의 수련·휴양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5.22 [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yna.co.kr